

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



2022년 학생 건강검사 실시 계획



2022. 2.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과]

목 차

I. 개 요	1
II. 추진방향	2
III. 추진계획	4
1. 일반사항	4
2. 건강검진	5
3. 별도의 검사	11
4. 신체의 발달상황	13
5. 건강조사	14
VI. 행정사항	15
VII. 부 록	16
1. 제출서식	17
2. 참고자료	21

2022년 학생 건강검사 실시계획

경기도교육청

I. 개 요

1. 목 적

- 가.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생활습관 및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치료하여 건강한 삶 도모
- 나. 학령기 학생 성장 평가 및 학생 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 기초자료 마련

2. 근 거

- 가. 「학교보건법」 제7조, 제7조의2 및 제7조의3
- 나. 「학교건강검사규칙」(교육부령, 2020.3.1.시행)
- 다. 「학생건강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 라. 「학교 건강검진 실시방법·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교육부 고시)
- 마.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
- 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 사.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13호, 2020.12.24.시행)

3. 현 황

- 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과 방역조치를 고려하여 건강검사 실시 계획을 수립(3월)하고 충분한 기간 확보하여 안전하게 연내 시행 필요
- 나. 학교에서는 「학교보건법」 및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라 재학생에 대한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학교별 학교보건계획 수립 시 학생건강조사 조사결과 활용도 미흡
- 다. 학교에서 검진기관 선정 시 「학교건강검사규칙」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검진 기관만을 선정함으로써 학생 및 학부모 선택의 폭을 제한

* 제5조의2(건강검진의 절차 등) ① 학교의 장은 법 제7조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건강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라.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검진기관을 방문하는 일자를 지정함으로써 학생 몰림 현상 등에 따른 불편 및 형식적 검진 초래

II. 추진방향

1. 학생 건강검사 추진(코로나19 대응 국가 방역조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각 급 학교에서 「학교보건법」 제7조 및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라 건강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리·지원

※ <학교건강검사규칙 개정 시행('20.3월~)> 건강검진 일부항목 삭제 및 추가, 문진표와 건강조사서 분리, 비만도 산출은 '체질량지수' 기준 산출방식으로 일원화 등

※ <참고> 초등학생 구강검진은 전체 학년이 대상이므로, '20~'21년 초등학생 구강검진을 연기한 경우라도 2022학년도에 2회가 아닌 1회만 실시

나. 학부모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학생·학부모의 검진기관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검진기관 선정 추진

- 건강검사 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날짜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검진기관과 협의하여 검진 추진

※ 단, 지역 내 검진기관이 없는 학교, 특수학교 등에서는 1개의 검진기관에 의한 출장검진 가능(「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건강검진의 절차 등) 제4항)

다. 학교건강검사 표본학교의 검사결과 작성·제출 등 철저

※ 2021~2023년 표본학교 지정·운영은 교육부 안내에 따라 추후 별도 공지

2. 검사결과의 적극 활용 및 유증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가. 학교의 장은 학생건강검사의 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생건강증진 계획을 수립·시행(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3항)

- 모든 학생에 대한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건강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보건교육 등 적극적인 보건교육 실시

- 건강검진결과에 따라 건강상담, 질병의 예방조치 및 치료 등의 보호 또는 양호의 대책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부모 상담 등 통해 적절한 대책 마련·추진

3. 학생건강검진 관련 민원에 대한 적극적 대응

가. 건강검진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 교육청 또는 단위학교(초·중·고등학교)에서 검진기관 방문 등을 통하여 해당 민원에 대한 설명 및 개선요청을 하고, 필요시 학생 및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검진의 문제점을 발견 등을 위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질(質)관리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방안 강구

나. 학교건강검사의 적법한 운영 지원 및 현장지도·점검 철저

※ 초등학생 구강검진 관련 참고사항(법률자문가 유권해석 결과)

◇ 「학교보건법」 제7조제2항제1호 단서규정에 따르면(2007.12.14 개정) 초등학생 구강검진의 방법(출장검진과 내원검진 등 방법결정 및 검진비용 등)은 교육감에게 위임된 사항임

▶ 따라서 「학교건강검사규칙」에서 정한 건강검사 세부방법은 구강검진을 제외한 일반검진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구강검진은 법률에서 정한 대로 교육감이 지역실정에 맞게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 검진기관으로 승인 받지 않은 보건(진료)소에서의 구강진료를 건강검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검진기관으로 승인 받지 않은 보건(진료)소에서의 구강진료는 검진이 아니며 이 경우에는 **학교건강검사에서의 '구강검진'은 미실시로 처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하고 객관적인 검토(근거)자료 첨부

▪ 「학교보건법」 제7조제4항에서는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이용 가능한 검진기관 부재 등)로 검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건강검사를 연기하거나 건강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지역 내에 검진기관의 부재 및 인근지역 이동 등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지역 내 보건(진료)소의 구강관리실 등에서 학생 구강진료를 받아 그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의 구강보건 관리를 할 수 있음

※ 일부 검진기관에서 학생검진결과를 임의 특정기관에 DB화 의뢰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학교의 주의 요망

Ⅲ.

추진계획

1. 일반사항 (※ 코로나19 대응 국가 방역조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실시계획의 수립

학교장은 건강검사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수립, 연도 중 실시 완료

나. 실시내용

검사항목	대상학년	실시기관	실시방법
건강검진	초1,4/중1/고1 (종합건강검진) 2020-2021년 미실시자	학교 지정 검진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병원방문 개별검진 •학교건강검사규칙 [별표 2]에 의함 •비용: 1인당 17,430~43,560원 •*학년별 검사항목 및 비만여부에 따라 검사비용 다름
	초2,3,5,6 (구강검진)	학교지정 검진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병원방문 개별검진 •학교건강검사규칙 [별표 2]에 의함 •비용: 1인당 7,830원
별도검사	초2,3,5,6 /중·고 2,3 (시력검사)	학교자체 (교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인시력표를 활용하여 좌, 우안 각각 측정
	초2,3,5,6 /중·고 2,3 (소변검사)	한국학교보건협회 경기도남북지부 또는 학교지정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시기관 학교출장검사 또는 기관방문검사 •학교건강검사규칙 [별표 2]에 의함 •비용: 1인당 760원
	고2,3 (결핵검사)	대한결핵협회 경기도지부 또는 학교지정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시기관 학교출장검사 또는 기관방문검사 •학교건강검사규칙 [별표 2]에 의함 •비용: 1인당 3,410원
신체발달 상황	초1,4/중1/고1	검진기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키, 몸무게 측정 후 비만도(체질량지수) 산출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기
	초2,3,5,6/ 중2,3/고2,3	학교자체 (교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건강검사규칙 [별표 1]에 의함 •1학기 말까지 실시, 7월말까지 NEIS입력/보고 •*건강검진 대상학년의 경우 검진계약기관과 측정기한이 다르면 학교별 자체 측정해야 함
건강조사	초1,4/중1/고1	학교자체 (교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의2(건강조사의 항목 및 방법) 병력, 식생활 및 건강생활 행태 등 학교별 건강조사 실시 [별지 제1호의2] 건강조사 항목 및 방법 참고 •1학기 말까지 실시
	초2,3,5,6 중2,3/고2,3		

※ 2020~2021년 미실시자(초2,3,5,6, 중2,3, 고2,3) 건강검진은 초1,4/중1/고1 건강검진 비용 참고

※ 별도검사: 특수학교 제외, **올 해 건강검진 실시자 제외**

※ 2021~2023년도 학교 건강검사 표본학교 : 표본학교 매뉴얼에 따라 건강검사 실시, 나이스 보고(별도 안내)

2. 학생 건강검진

가. 검진시기 : 3월 ~ 12월

- 원활한 건강검진 실시 및 통계를 위해 가능한 11월 말까지 건강검진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단, 건강검사 표본학교의 건강검진 기간은 별도안내)

나. 검진대상 :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2020~2021년 건강검진 대상자 중 미실시자

다. 검진기관

검사항목	대 상 학 년	실시기관	실시방법	검진비용	비 고 (관련근거)
건강검진	초1,4/중1/고1 (건강검진) 2020~2021년 미실시자	학교지정 검진기관	병원방문 검진	2022년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검진 실시 기준」 수가 적용	학교보건법 제7조, 학교건강검사규칙 제3조
	초2,3,5,6 (구강검진)	검진기관	병원방문 검진	7,60원 (교육감결정사항) 2022년 보건복지부 고시 수가	고시수가 100% 반영 (전년대비 230원 인상)

1) 구강검진(초2,3,5,6) 수가는 단계적으로 적정 수준의 구강검진 수가 인상분 반영(2016년 76.0% → 2017년 88.0%), 2018년부터 고시 수가 100% 반영함

2) 경기도청 「2022년 경기도 초등학교 치과주치의사업」 참여 기관에서 검진 가능

- 대상: 도내 초4학년 학생 전체(특수, 대안학교, 학교밖 청소년 포함)

- 예산: 학생 1인당 4만원 지원(도청 예산 100%)

* 초 4,5학년 구강검진예산 수립한 경우는 학교자체 구강보건사업 등으로 변경 활용

- 구강검진 서비스 : 구강검진, 구강교육, 예방진료 포함

- 경기도청의 해당 사업에 대한 자세한 일정은 별도 안내 자료 참고

※ 관련 규정

학교보건법 제7조(건강검사 등)

② 학교의 장은 <중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기관에 의뢰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건강검사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및 4학년 학생. 다만, 구강검진은 전 학년에 대하여 실시하되, 그 방법과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이하 생략>

라. 건강검진 비용 : 학교 회계

- 1) 근거 : 2022년도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검진 실시기준」 수가 적용(2022.1.1)
- 2) 학년별 1인당 검진비용[참고자료 2~3]

학년별	초등학교		중 1학년		고 1학년				
	1학년	4학년		정상	비만	남학생		여학생	
		정상	비만			정상	비만	정상	비만
검사비 (단위:원)	17,430	9,600 (구강검진 제외)	26,240 (구강검진 제외)	24,240 ~25,890	40,880 ~42,530	24,240 ~25,890	40,880 ~42,530	25,270 ~26,920	41,910 ~43,560

- ※ **비만** : 초4학년 이상, 연령별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95이상 학생에 한하여 검사항목 추가
(허리둘레, HDL/LDL Cholesterol, 중성지방 항목 추가)
- ※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LDL)은 총콜레스테롤,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HDL), 중성지방 측정 후 계산값 산출(검진비용 제외)
- ※ 중1학년, 고1학년의 경우 결핵검사(흉부방사선) 방법의 차이로 검진비용 상이
- ※ 2020~2021학년도 미 실시 학생(초2,3,5,6학년, 중고 2,3학년)은 초1,4학년, 중고 1학년 비용 참고

마. 건강검진 실시방법

1) 건강검진 절차 등

- 가) 학교장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 다만 검진기관을 2개 이상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장의 승인(교육지원청)**을 얻어 1개의 검진기관만 선정할 수 있음
- 나) 검진대상자는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건강검진 (단, 검진기관이 없는 지역에 소재한 학교는 1개 검진기관만 선정하여 출장검진 가능)
- 다)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 제4항 1~2호에 해당하지 않는 학교 중 부득이하게 1개의 검진기관 선정 또는 출장검진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는 학생 건강검진 실시기관 선정 완화 승인기준 [서식 3호]를 참고하여 각 급 학교는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승인 후 검진 실시
- ※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제6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24호 개정 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2019.8.6.시행)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건강검진의 절차 등) ④ 학교의 장은 제1항 본문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의 검진기관만을 선정하여 검진기관이 검진대상자에 대한 출장검진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1. 학교가 소재한 지역(읍, 면, 동을 말한다)에 검진기관이 없는 경우 **☞교육지원청 교육장 승인 불필요**
-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지원청 교육장 승인 불필요**
-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장검진이 불가피하다고 교육감이 승인한 경우 **☞교육지원청 교육장 승인 필요**

- 라) 검진기관은 문진표(규칙 [별지 서식 1의2, 1의3, 1의4] 양식)를 검진 대상자에게 작성·제출하게 한 후, 신체발달상황과 건강검진을 실시
- 마) 검진기관은 검진실시 후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학교장에게 결과 통보

2) 검진기관 선정과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가) 선정기준

- (1) 학교장은 검진기관의 기준에 적합한 의료기관 중 시설·설비, 인력과 전산처리능력 등을 확인하여 정확성, 편리성을 갖춘 기관 선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 별표 1, 별표 4, 별표 5와 관련 인력·시설 및 장비 등 검진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검진기관 선정

※ 검진기관 검색: 건강 IN(<http://hi.nhis.or.kr>) → [건강검진] → [검진기관 정보-검진기관 찾기]

- (2) 검진기관에 구강진료과목이 없는 경우, 별도의 구강검진기관을 선정하여 실시하되 의과검진기관과 구강검진기관을 각각 2개 이상 선정
 - 검진기관은 학생들이 최대한 분산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 많은 기관을 선정 운영

나) 계약체결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계약
- (2) 검진준비, 검진항목, 검진비용부담, 검진결과 처리방법 등 검진실시에 따른 의료사고의 책임한계, 손해배상 이행등 명기
- (3) 학생 건강검진 시 필요한 계약 서류의 간소화로 검진관련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불필요한 민원 해소
 - 학생 건강검진 승낙서 예시문(안) [참고자료 1]
- (4) 학생건강검진기관은 조달청 미등록업체, 영세업체(병원) 등 부득이한

- 사유로 전자계약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존방식 적용(계약) 가능
- (5) 교육지원청은 학교 건강검사의 적법 운영에 대한 현장지도·점검 철저
 - 학교의 장과 검진기관의 장과의 계약 및 대금지급 규정준수 여부(위임 불가)
 - 학교와 지역치과의사회의 단체계약에 의한 구강검진 실시 불가
 - 학교장의 검진기관 선정 완화 요청 시 신속한 완화 승인 등 적극행정 처리

다) 학교 유의사항

※ 코로나19 대응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검진기관 방문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안전하게 건강검진을 시행하도록 노력

- (1) 의과검진기관에서 구강검진기관을 계약한 후 학교에서 의과검진기관만 계약하여 구강검진까지 실시하는 사례 불가
- (2) 검진기관 선정, 실시 등의 이유로 어떤 혜택도 받지 않는다는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건강검사의 부실을 방지 (예시: 장학금 지급 혜택, 교직원 무료 건강검진 쿠폰 지급 등)
- (3) 「학교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의 항목과 방법 준수, 검진 시 발생할 수 있는 학생의 사고 예방 철저
- (4) 학생건강검진 계획, 검진대상자 명부, 건강검진 판정기준, 점검계획 등 검진에 필요한 사항을 검진기간으로 통보
- (5) 형식적인 검사가 되지 않도록 학생과 의사와의 충분한 진찰 및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조치, 필요시 검진기관 점검 실시
- (6) 가급적 학생들이 도보로 이동 가능한 학교 인근 여러 검진기관과 계약하여 학생들의 개별 방문 검진 편리성 도모
- (7) 건강검진 전 비만*학생을 확인하여 검진 당일 공복 상태로 기관에 방문하도록 안내하여 혈액검사를 위해 재방문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정보제공

* 「학교건강검사규칙」 별표 1.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항목 및 방법'의 비만도 기준 확인, 201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의 연령별 체질량지수(BMI) 백분위수 95이상

- (8) 각종 대회 출전, 기타 등의 사유로 건강검진 누락 학생이 없도록 조치

라) 검진기관 준수사항

- (1) 검진기관은 개정된 문진표(초/중·고등학교용), 구강검진문진표 및 검진안내서를 기관에 비치하고, 검진당일 개인별 문진표를 작성제출

- (2) 검진기관은 학교장과 협의, 검진당일 진찰 및 각종 검사 실시 전에 학생에게 주의사항 등 안내
- (3) 학생, 학부모 및 학교의 편의를 위해 주중 및 방학이나 토요일, 공휴일에도 검진을 실시하는 방안을 학교와 협의토록 하고, 특정 일에 학생 및 학부모가 집중되는 경우 추가 안내 인원 배치 및 안전 통제 실시
- (4) 검진기관은 검진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검진대상자에 대하여 학년별 검사항목을 누락되지 않도록(특히, 비만학생) 검진 실시
 - ※ 검진기관은 제시된 학생건강검진 검사항목을 누락하거나 그 이외에 개인 부담의 추가검진을 유도하는 행위 금지(검사항목 사전 확인)
- (5) 검진 인력은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무면허 의료행위 및 무면허자의 업무 금지
- (6) 학교장이 검진 인력 및 검진 장비 검증 등 확인을 위한 증명서류 요구 시에는 즉시 응하여야 함
- (7) 건강검진결과 시급히 정밀검진을 필요로 하는 학생은 학교장 및 학부모에게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안내하여야 함
- (8) 학생 개인에 대한 인적사항 및 검진 결과와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 철저(개인정보보호법 준수)
- (9) 검진기관에서 차량을 제공하여 학생을 검진기관으로 이송금지(의료법 제27조 제3항)

3) 검진결과 처리

가) 결과 기록과 판정

- 「학교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 참고

나) 결과통보

(1) 검진기관

- 학생건강검사 결과 통보서(규칙 서식 1의5), 학생구강검사 결과 통보서(규칙 서식 1의6)를 각각 작성하여 검진완료 후 15일 이내에 학생 또는 학부모, 학교장에게 통보
- 건강검진 결과 긴급히 정밀검진을 요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학교장 또는 학부모가 조기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즉시 통보

- 학생의 인적사항과 검진결과 등은 철저히 개인 비밀보장

(2) 학교장

- 검진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는 학생건강기록부(NEIS)에 기록, 신체의 발달상황 및 건강검진 통계표를 작성, 건강관리 자료로 활용
- 건강검진 실시대상이 아닌 학생의 건강검사 결과 (신체발달상황, 별도의 검사 등)도 ‘학생건강기록부’에 기록
- 검진기관이 통보한 건강검사 결과 원본은 최소 당해년도 보존 후 폐기하며 단, 학교장이 건강검사 결과 지속적인 관리를 판단한 경우 (요양호자 등) 필요시 보관 가능하고, 학생 전출 시 이관되지 않음 (「학생건강기록부 전산처리 관리지침」 제14조 참고)
- 검진결과 이상자에 대하여는 정밀검진, 조기치료 등을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에게 통보하고, 추가 검사결과 확인 등 사후관리 철저
- 검진결과와 관련하여 학생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특히, 건강이상자에 대하여는 상담 활동 등 지도대책 강구
- 건강검진 대상 학생이 불가피한 사유(장기결석자, 전입생 등)로 건강검진 미실시한 경우, 다음 학년도에 우선적으로 검진을 받도록 조치
- 건강검진결과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이 혈액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당해 연도 내에 검진을 받도록 조치

다) 검진비용 청구 및 지급

- (1) 검진기관이 검진비용 청구서를 작성할 때에는 당해 검진기관의 종사자가 검진결과를 토대로 작성하고 그 청구내용 및 금액은 대표자가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위임 불가)
- (2) 학교장은 검진기관의 검진비용 청구가 있을 때에는 검진비용 청구서의 각 항목 실시 인원과 명단을 확인한 후 접수처리

4) 기타 유의사항

- 가) 건강검진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에서 검진기관에 해당 민원에 대한 설명 및 개선요청을 하고, 적극적인 조치방안 강구
- 나) 학교와 검진기관이 사전예약제를 도입한 경우, 학부모의 사정으로 예약기간이 지나서 검진기관을 방문하였으나 해당학교의 검진기간 경과 이유로 검진을 받지 못하는 등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

3. 학생 별도의 검사

가. 실시계획의 수립

학교장은 별도의 검사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검진기관과의 일정을 협의 후 시행

나. 추진현황

1) 결핵검사 : 고2·3학년, 대한결핵협회 경기도지부

구 분	검사인원(명)	검사단가(원)	비 용(천원)	양성인원(%)	총 결핵환자 발생수 (나이스 확진보고)
2021년	114,946	3,310	380,471	6(0.0006)	32
2020년	171,034	3,240	554,150	6(0.0001)	24
2019년	229,035	3,200	732,580	13(0.006)	51

2) 소변검사 : 초2·3·5·6/중2·3/고2·3학년, 한국학교보건협회 경기도지부

구 분	검사인원(명)	검사단가(원)	비 용(천원)	요단백 양성인원(%)	요잠혈 양성인원(%)
2021년	488,924	740	361,803	569(0.0012)	425(0.0009)
2020년	미 실시	730	-	-	-
2019년	979,512	810	793,404	1,480(0.15)	1,688(0.17)

다. 검사 항목 *학교건강검사규칙 제6조(별도의 검사)

검사 항목	대상학년	실시기관	검사방법	검사비 (학교회계)	비고
시력	초2,3,5,6/ 중2,3/ 고2,3	당해 학교 (교직원)	•공인시력표에 의한 검사 •오른쪽, 왼쪽의 눈 각각 검사 •안경 등으로 시력을 교정한 경우에는 교정시력을 검사	없음	학교별 자체 일정
소변	초2,3,5,6/ 중2,3/ 고2,3	• 한국학교보건협회 경기도(남,북)지부 • 학교장 지정기관	•요검 또는 시험관 등 이용, 신선한 요 채취 후 시험지 사용 측정 (요단백, 요잠혈 검사)	1인당 760원	• 경기도남지부 (031)-273-9501 경기도북지부 (031)-842-7200 • 학교지정(계약)기관
결핵	고2,3	• 대한결핵협회 경기도지부 • 학교장 지정기관	•상의속옷 탈의 후 촬영 •흉부 X-선 촬영 및 판독	1인당 3,410원	• 대한결핵협회 경기도지부 (031)-245-8674 • 학교지정(계약)기관

다. 실시대상 : 초, 중, 고등학교(특수학교는 제외)

* 2020~2021년에 연기하여 올 해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는 별도의 검사 “제외”

라. 실시기간 : 3월~12월 중 실시 완료

마. 검사기관 선정 시 유의사항

1) 대한결핵협회, 한국학교보건협회를 통한 별도의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는 기존방식과 동일

2) 일반검진기관을 통해 별도의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는 계약방법, 비용 지급방식은 학교 상황에 따라 간소화하여 시행

* 단, 결핵검사는 건강검진 수가가 아닌 별도의 검사 비용인 3,410원으로 지급

바. 항목별 실시 방법

1) 시력검사 : 교직원, 공인시력표를 활용하여 측정

2) 소변 및 결핵검사 : 검사기관이 학교별 순회 출장검사

- 일정조정은 실시기관과 해당 학교가 직접 협의 후 진행

- 검사대상확인 및 결과 통보를 위한 명단(학년, 반, 이름)을 검진기관에 제공

- 검사 당일 및 재검사 검사대상자 확인, 장소제공 등 협조/지원

- 결핵검사는 정확한 검사를 위해 상의 속옷 탈의, 금속류 및 장신구 제거 하고 검사용 가운을 환복한 후 흉부 X선을 촬영하도록 안내 및 확인

- 소변검사는 요단백, 요잠혈 2종에 대해 임상병리사가 검사 진행

사. 검사 결과 : 학생 건강검사 추진 현황[서식1] 작성 제출

아. 기타 유의사항

1) 검사의 필요성, 주의사항 안내와 사전·사후 보건교육 실시

- 검사결과 유소견자는 정밀 검사 및 진료가 연계되도록 조치하고, 시력은 교정할 수 있도록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와 시력관리 보건교육 실시

2) 학교장은 별도검사의 실시결과 확인 및 학생건강기록부와 별도 관리

3) 건강검사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필요한 조치시행, 가정과의 연계관리

※ 결핵으로 판명된 학생은 관할 보건소에 등록하여 치료받도록 하고, 교육(지원)청에 유선 보고 후 NEIS 입력, 역학조사시 업무관리시스템으로 별도 서면보고(지정양식 참고)

4. 신체의 발달상황

가. 검사기한 : 1학기 말까지

나. 검사대상 : 초1학년~고3학년

* 건강검진 대상학년(초1·4, 중1, 고1학년)의 경우 검진계약 기간과 검사 기간이 상이한 경우 학교에서 별도 측정해야 함

다. 검사항목 및 방법

1) 항목 : 키(cm), 몸무게(kg), 비만도

2) 방법 : [별표1]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항목 및 방법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측정

* 비만도: 201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연령별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확인

라. 검사자 : 교직원

마. 결과처리 및 제출기한 : 7월말까지 나이스 입력/전송 보고

1)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체중이상 학생(저체중/과체중/비만) 대상 학교별 맞춤형 건강관리 대책마련

2) 담임교사, 학부모 연계 지도 및 지역사회자원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2020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결과, 중·고등학생 비만을 지속 증가 추세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 국	7.5	9.1	10.0	10.8	11.1	12.1
경 기	6.6	7.9	8.6	9.8	9.7	10.7

*비만기준: 체질량지수(BMI) 95백분위수 이상인 학생의 비율(%)

5. 건강조사

가. 조사기한 : 1학기 말까지

나. 조사대상 : 초1학년~고3학년(건강검진 문진표로 대체 불가, 별도 실시)

다. 조사항목 및 내용

1) 「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2항 별표1의2(건강조사 항목 및 방법)을 참고하여 학교자체 제작한 건강조사표 활용

- 2021년 학생건강검사 표본학교 매뉴얼 건강조사표(참고자료4) 참조

2) 건강조사 양식을 학교에서 직접 인쇄하여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설문 내용 중 학부모의 도움이나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가정에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지도

라. 조사자 : 당해 학교 교직원

마. 결과처리 : 상반기 중 조사결과를 통계처리 및 분석(학년별, 성별, 연도별 비교)하여 학생 건강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

<참고자료>

» 2020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결과(중·고등학생)

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바로가기](#))

» 2019년 전국 초·중·고등학생 건강검사 결과(표본학교)

교육부 학생건강정보센터, 학교보건, 건강증진교육 ‘건강검사’ 결과 ([바로가기](#))

* 현재 2020년 자료 미탑재, 2021년 자료 탑재 예정

- 건강 요양호자 학생에 대한 학생기록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보관·관리(기록지에는 개별 전화번호, 지정병원·투약정보 등 의료정보, 기타 유의사항 등을 포함)하며 개인정보 보안 유지

1.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 학교장은 해당 학교 검진기관 지도·점검, 검진기관 만족도 조사 실시
- 교육장은 관내학교, 검진기관 현장지도 및 점검실시
(※ 민원발생기관 지도·점검 필수)
- 점검 내용: 검진기관의 의료관련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 문진표, 결과 통보서, 검진안내서, 검진장비의 검사성적 확인을 위한 증명 서류, 검진방법 및 진행의 적절성 여부 등
 - *지역(치과)의사회와 단체계약 또는 위임 계약/지급 불가
- 건강검진비 허위·이중 청구 등 부당청구 행위가 확인될 시에는 해당 검진비의 환수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 등에 의거 강력 조치

2. 제출 목록

보고사항	학교(초, 중, 고, 특수, 각종학교)	교육지원청	서식
1. 학생건강검사 추진 현황	보고기한 및 방법은 교육지원청에서 지정	2023.1.16.(월)까지 도교육청 업무관리시스템으로 보고	서식1
2. 학생 신체의 발달상황 통계표	보고기한 및 방법은 교육지원청에서 지정	2022.7.31.까지 도교육청 업무관리시스템으로 보고	서식2
3. 학생건강검진 선정원화 승인요청서	초, 중, 고, 각종학교 → 교육지원청(기한 및 방법은 교육지원청에서 지정) *경기도교육청 행정 권한 위임 조례 개정(2019.8.6.)에 따라 고등학교도 해당 모든 학교는 교육지원청으로 승인 요청		서식3

□ 제출서식

1. 학생 건강검사 추진 현황 【서식 1】 -----	17
2. 학생 신체의 발달 통계표 【서식 2】 -----	18
3. 학생 건강검진기관 선정 완화 승인 요청서 및 승인기준 【서식 3】 -----	19

□ 참고자료

1. 학생 건강검사 승낙서 예시문 【참고자료 1】 -----	21
2. 2022년 학생 건강검사 고시수가 【참고자료 2】 -----	23
3. 2022년 학생 건강검사 단가표 【참고자료 3】 -----	24
4. 건강조사표 예시(2021년 학생건강검사 표본학교 매뉴얼) 【참고자료 4】 -----	25

□ 관련법규 검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 |
|--|
| 1. 학교건강검사규칙(교육부령 제240호, 2021.6.30. 시행) |
| 2. 학생건강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27호, 2020.3.1. 시행) |
| 3. 학생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교육부고시 제2020-217호, 2020.3.1. 시행) |
| 4.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9.27. 시행) |

[서식 1]

학생건강검사 추진 현황 *엑셀서식보고

기관명 : 교육지원청

1.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건강검진 (신체발달상황, 구강검진 포함 / 단위 : 교, 명, 천원)

학교급	학년	전체 학교수	건강검진 미 실시 학교수	전체 학생수		검진완료 학생수		검진소요 비용 합계
				남	여	남	여	
초	1							
초	4							
중	1							
고	1							

- 교육지원청 현황 보고 시 특수학교·각종학교는 해당 학년에 포함, 분교는 본교에 포함하여 작성, 필요시 행 추가

2. 초등학교 구강검진 (단위 : 교, 명, 천원)

학년	전체 학교수	구강검진 미 실시 학교수	전체 학생수		검진완료 학생수		검진소요 비용 합계
			남	여	남	여	
2							
3							
5							
6							

- 학교는 학년별 작성/분교는 본교에 포함 작성, 교육지원청 제출 시 특수학교·각종학교는 해당 학년에 포함, 필요시 행 추가

3. 별도검사 실시현황 (단위 : 명, 천원)

○ 소변검사 및 시력검사

학교급	학년	소변검사					검진기관	시력검사	
		전체인원	검사인원	요단백 양성인원	요잠혈 양성인원	요단백 및 요잠혈 모두 양성인원		전체인원	검사인원
초	2						보건협회0교 기타0교		
초	3						"		
초	5						"		
초	6						"		
중	2						"		
중	3						"		
고	2						"		
고	3						"		

- 특수학교 미 실시, 각종학교는 해당 학년에 포함, 필요시 행 추가

○ 결핵검사

학교급	학년	전체인원	검사인원	결핵확진 학생수*	소요비용	검진기관
						결핵협회 00교 기타 00교

- 결핵확진(의심)되어 치료 중인(치료를 받은) 학생, 서식에 행 추가하여 작성(별도검사만 실시한 학년의 내용 작성)

[서식 2]

*엑셀서식보고(초/중/고 구분 작성)

학생 신체의 발달상황 통계표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년 도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input type="checkbox"/>초 <input type="checkbox"/>중 <input type="checkbox"/>고 </div>		기관명 :													
구 분	성별	학년	학년	학년	학년	학년	학년								
키 평균 (cm)	남자														
	여자														
몸무게 평균 (kg)	남자														
	여자														
비만율	분 류	성별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저체중 (%)	남자													
		여자													
	정 상 (%)	남자													
		여자													
	과체중 (%)	남자													
		여자													
	비 만 (%)	남자													
		여자													
	검사인원수 (명)	남자													
		여자													
		계													

※ 작성방법

1. 이 통계표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별로 1학기말까지 측정하여 각각 작성합니다.
2. 키·몸무게 평균은 성별·학년별 수검자의 키·몸무게를 평균한 값이며, 소수 첫째자리까지 작성합니다(계산한 값이 소수 둘째자리 이상까지 나오는 경우에는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이하 제3호에서 같습니다).
3. 비만율은 성별·학년별 수검자 인원 대비 저체중·정상·과체중 및 비만인 수검자 인원의 비율이며, 소수 첫째자리까지 작성합니다. ()에는 해당 성별·학년별 수검자 인원을 작성합니다.

학생 검진기관 선정 완화 승인 요청서(예시)

※ 코로나19 대유행 상황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서식 수정 사용

학 교 명				
검진대상학급수				대상학생수
소재지	도로명 주소			담당자명
	지번 주소			직통 전화번호
구 분		요 청 내 용	요 청 사 유	
1개 검진기관 선정		1개 종합검진기관 선정 ()	1개 검진기관만 참여 () 검진 학생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 () 학교 건강검사 표본학교 () 기타 사유 ()	
		1개 의과검진기관 선정 ()		
		1개 구강검진기관 선정 ()		
출장검진기관 선정		출장 종합검진기관 선정 ()	학교 건강검사 표본학교 () 검진대상 학년이 기숙사 생활 () 기타 사유 ()	

***요청내용과 사유에 해당항목에 각각 √ 표 기입**

☞ 승인기준을 확인하여 기타 요청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설명기입

1개 검진기관 선정	
출장검진기관 선정	

- 초·중·고등학교·각종학교 ☞ 교육지원청으로 제출

□ 학생 건강검진 실시기관 선정완화 승인기준

구 분	승 인 기 준
1개 검진기관 선정	1. 학교가 소재한 지역(읍, 면, 동을 말한다)에서 1개의 검진기관만 학생 건강검진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의 학교 2. 검진대상 학생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 3. 학교 건강검사 표본학교 4. 기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장이 승인하는 경우
출장검진 기관 선정	1. 학교 건강검사 표본학교 2. 검진대상 학년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학교 3. 기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장이 승인하는 경우
건강검진 선정 완화 승인 제외 대상 (승인 요청서 제출 불필요)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 제4항에 따라 1. 학교가 소재한 지역(읍·면·동)에 검진기관이 없는 경우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1개의 검진기관만을 선정하여 검진기관이 검진대상자에 대한 출장검진을 할 수 있음

※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초·중·고등학교(각종학교 포함)는 해당 교육지원청에 승인요청서 제출(→교육장이 승인) 후 1개 기관 검진 또는 출장검진 실시

※ 학교 소재지가 같거나 인근에 있는 학교(병설교, 통합학교, 동일 법인학교 등)가 완화 승인 요청 시 학교(급)별 지역 상황이 다르게 조사되어 혼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것

※ 기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장이 승인하는 경우 : 코로나19 대유행 국가재난 상황을 고려하여 적극 승인처리

[참고자료 1]

학생건강검진기관 계약 관련 서류 간소화방안으로 마련한 ‘학생 건강검진 승낙서’에 대한 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작성된 서식(안)으로 학교 필요에 따라 검진기관 계약서류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 서식(안)은 법정서식이 아니므로, 관련 법령 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학생 건강검진 승낙서 예시문(안)

학생 검진기관으로서 아래 계약내용, 학생건강검진 유의사항, 준수사항 등 검진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승낙합니다. [계약서 작성 생략]

<input type="checkbox"/> 검진기관		(전화번호: _____)	
병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원장성명	(인)

<input type="checkbox"/> 계약내용			
계 약 건 명	20 년도 ○○학교 학생 건강검진		
1인당검진비용	1학년	4학년	4학년 비만학생
검 진 대 상	1, 4학년 학생 _____ 명 중 방문학생		
검 진 기 간	20 년 월 일 ~ 월 일	검진완료일	20 년 월 일
계약보증금	계약금액(검진대상인원*검진비용)의 10%		
지연배상금	검진완료 후 30일 이내에 결과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매1일마다 청구금액(검진인원*검진비용)의 1,000분의 1.3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여야할 금액은 계약대가에서 상계할 수 있다.		

□ **검진기관의 학생건강검진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

1. 건강검진 항목과 방법: 검진기관은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제2항 관련 [별표2]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적절한 의료장비를 사용하여 학생 개인별로 정밀하게 실시한다.
2. 건강검진 결과 판정과 기재방법: 검진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학교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검진결과를 판정, 기재한다.
3. 검진결과 통보: 검진기관은 건강주의, 질환의심 또는 유소견자의 경우 치료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완료 후 **30일** 이내에 검진학생에 대하여 학생건강검사(구강검진)결과통보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검진기관이 보관, 1부는 학생 또는 그의 보호자, 1부는 학교로 통보한다.
4. 검진기관 준수사항
 - 가. 검진기관은 검진실시에 앞서 검진에 필요한 일반검진문진표, 구강검진문진표, 검진안내서(검진장소, 검진시간, 검진절차, 검진 시 유의사항 등) 등을 사전에 학생들에게 배부
 - 나. 검진기관의「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을 반드시 충족하고 검진업무 수행
 - 다. 검진기관은 흉부방사선 검사를 위한 방사선발생장치와 및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신고필증 사본을 비치하고, 검진장비에 대한 정도관리 철저
 - 라. 무자격자(의사가 아닌 간호사, 치과위생사 등)의 검진행위 금지
 - 마. 검진결과 통보시기 준수
 - 바. 학생의 인적사항, 검진자료 등의 개인정보 보호와 검진통계자료 보안관리 철저
5. 사고책임: 검진기관은 학생 건강검진에 따른 제반 의료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검진과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는 검진기관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6. 기타 비용: 검진기관은 학생 건강검사에 따른 제비용을 부담하고, 계약금액 이외의 여하한 명목의 경비를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없다.
7. 검진비용의 청구.지급: 검진기관은 검진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학교는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지급한다.
8. 손해배상: 검진기관은 상기 계약사항을 이행치 아니하였을 때 계약보증금을 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검진기관이 "학교장"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한다.
9. 검진취소 등: 천재지변 또는 학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학생 건강검진이 취소되거나 연기될 때에는 학교는 즉시 검진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검진기관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0. 계약조건: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학교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한다.(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학교에서 교부)
11. 계약 시 제출서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수의각서(학교에서 서식 제공), 통장사본

[참고자료 2]

2022년 건강검진 항목별 고시수가

(보건복지부, 2022.1.1. 단위: 원)

순위	검 사 항 목	2021년 수가	2022년 수가	증 감
1	1차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진찰, 상담, 눈, 귀, 코, 목 등 -신장, 체중, 비만도 -혈압측정, 결과통보 등 -허리둘레*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 검사)	8,590	8,840	250
2	흉부방사선 직촬(14*14")	7,980	8,150	170
3	흉부방사선 직촬(14*17")	8,300	8,460	160
4	흉부방사선 CR/DR	6,620	6,810	190
5	흉부방사선 Full PACS	7,510	7,720	210
6	요검사(요단백,요잠혈)	740	760	20
7	혈액검사(혈색소)	1,000	1,030	30
8	혈액검사(공복혈당)	1,280	1,310	30
9	혈액검사(총콜레스테롤)	1,510	1,560	50
10	혈액검사(AST)	1,830	1,880	50
11	혈액검사(ALT)	1,790	1,840	50
12	혈액검사(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6,140	6,320	180
13	혈액검사(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계산값	계산값	0
14	혈액검사(중성지방)	3,620	3,730	110
15	(구강검진)상담료 및 행정비용	7,600	7,830	230
<p>※ 「학교건강검사규칙」 개정(2020.3.1.시행)에 따라 2020년부터 학생 건강검진 항목 변경 * 비만학생에 한하여 대사증후군 검사(허리둘레, 중성지방, HDL-Chol, LDL-Chol)추가 -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LDL)은 총콜레스테롤,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HDL), 중성지방 측정 후 계산값 산출(검진비용 제외)</p>				

[참고자료 3]

2022년 학생 건강검진 단가표

(보건복지부 고시 2022.01.01.)

검 사 항 목	초1,4학년			중1학년		고1학년					
	1학년	4학년		정상	비만	남학생		여학생			
		정상	비만			정상	비만	정상	비만		
1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8,840	8,840	8,840	8,840	8,840	8,840	8,840	8,840	8,840	8,840	
- 진찰 및 상담											
- 척추형태(척추측만증 검사)											
- 눈(시력, 안질환)											
- 귀(청력, 귓병)											
- 콧병, 목병, 피부병											
- 신장, 체중, 비만도(BMI)											
- 허리둘레(비만학생에 한함)											
- 혈압측정											
- 결과통보 등											
2 구강검진치아 및 구강상태	7,830	7,830	7,830	7,830	7,830	7,830	7,830	7,830	7,830	7,830	
3 요검사(요단백, 요잠혈)	760	760	760	760	760	760	760	760	760	760	
4 혈액검사	미 실시	미 실시	16,640	미 실시	16,640	미 실시	16,640	미 실시	16,640	미 실시	16,640
-비만 : 혈당, AST, ALT, 총콜레스테롤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계산값)											
- 고(여) : 혈액소										1,030	1,030
6. 결핵검사	CR or DR	미 실시	미 실시	미 실시	6,810	6,810	6,810	6,810	6,810	6,810	6,810
(흉부방사선 촬영) - 촬영, 판독, 재료대 포함	직 촬	14"×14"	미 실시	미 실시	미 실시	8,150	8,150	8,150	8,150	8,150	8,150
		14"×17"	미 실시	미 실시	미 실시	8,460	8,460	8,460	8,460	8,460	8,460
	Full PACS	미 실시	미 실시	미 실시	7,720	7,720	7,720	7,720	7,720	7,720	7,720
금액 합계	CR or DR	17,430	17,430	34,070	24,240	40,880	24,240	40,880	25,270	41,910	
	14"×14"				25,580	42,220	25,580	42,220	26,610	43,250	
	14"×17"				25,890	42,530	25,890	42,530	26,920	43,560	
	Full PACS				25,150	41,790	25,150	41,790	26,180	42,820	

- * 초4학년 구강검진은 경기도청 주관 ‘치과주치의사업’에 참여 가능(학생건강검진 비용 제외)
- * 혈액검사(비만학생): 혈당, 총콜레스테롤,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HDL), 중성지방,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LDL) 및 간 세포효소(AST, ALT)
 -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LDL)은 총콜레스테롤,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측정 후 계산값 산출(검진비용 제외)
- * 비만: 201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연령별 체질량지수(BMI) 백분위수 95이상인 경우
- * 중, 고등학교 1학년 결핵검사 비용은 검사방법에 따라 비용을 산정한 금액임
- * 2020학년도 검진 미 실시 학생(2021학년도 초2,5학년, 중고 2학년)은 초1,4학년, 중고 1학년 비용 참고
- *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구강, 혈액검사 비용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조사표 [초등학교용]

수검자 인적 사항	학 교 명			
	학년 / 반 / 번호	학년	반	번호
	성 명			
	성 별	남	여	생년월일

다음 문항에서 자신이 해당하는 곳에 "V"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일주일 동안 다음 음식을 대체로 몇 번이나 먹습니까?				
라면	① 먹지 않음	② 1~2번	③ 3~5번	④ 매일 먹음
음료수	① 먹지 않음	② 1~2번	③ 3~5번	④ 매일 먹음
패스트푸드(햄버거, 피자, 튀김 등)	① 먹지 않음	② 1~2번	③ 3~5번	④ 매일 먹음
육류(소, 돼지, 닭고기 등)	① 먹지 않음	② 1~2번	③ 3~5번	④ 매일 먹음
우유, 유제품	① 먹지 않음	② 1~2번	③ 3~5번	④ 매일 먹음
과일	① 먹지 않음	② 1~2번	③ 3~5번	④ 매일 먹음
채소(김치 제외)	① 먹지 않음	② 1~2번	③ 3~5번	④ 매일 먹음

아침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① 거의 꼭 먹음 ② 대체로 먹음 ③ 대체로 안 먹음 ④ 거의 안 먹음
살을 빼기 위해 아래와 같이 경험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있는 대로 고르시오)	① 아무 것도 안 함 ② 식단을 조절한다. ③ 약을 먹는다. ④ 운동으로 감량한다.

		예	아니오
수면 및 신체활동	일주일에 세 번 이상 숨이 차거나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합니까?		
	평소에 하루 몇 시간 정도 잡니까?	① 6시간 이내 ② 6-7시간 ③ 7-8시간 ④ 8시간 이상	
	친구들과 비교해서 자신의 체형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마른 편이다 ② 약간 마른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살이 찐 편이다 ⑤ 매우 살이 찐 편이다	
개인위생	밥을 먹기 전이나 밖에서 놀다 돌아와서 비누로 손을 씻는다.	예	아니오
	하루에 두 번 이상 이를 닦는다.	예	아니오
안전	자동차를 탈 때 안전벨트를 맨다.	예	아니오
	인라인스케이트·롤러블레이드·스케이팅보드 또는 자전거 등을 탈 때 헬멧을 쓰고 보호대를 착용한다.	예	아니오
TV·인터넷	텔레비전을 하루에 2시간 이상 본다.	예	아니오
	인터넷이나 게임을 하루에 2시간 이상 한다.	예	아니오
가정 및 학교생활	지난 1년 동안 친구들에게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예	아니오
	돈을 빼앗는 친구가 있다.	예	아니오
	내 몸을 자주 만지는 사람이 있다.	예	아니오
	집을 나가고 싶을 때가 자주 있다.	예	아니오
	우리 가족은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나의 감정을 존중해 준다.	예	아니오
	자주 매를 맞는 편이다.	예	아니오
약물	위의 문제로 선생님의 상담이 필요하다.	예	아니오
	같이 사는 사람 중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다.	예	아니오
	같이 사는 사람 중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걱정되는 사람이 있다.	예	아니오
정서	모든 것이 귀찮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예	아니오
	공부시간에 선생님께 자주 혼난다.	예	아니오
부모님란	귀하의 자녀가 만 5세 이후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항상 뛰어다니거나 말을 많이 합니까?(1학년만)	예	아니오
	귀하의 자녀는 주의력이 없고 주의가 산만합니까?(1학년만)	예	아니오
	고민이나 괴로운 일로 상담을 받고 싶다.	예	아니오

건강조사표 [중·고등학교용]

수검자 인적 사항	학 교 명			
	학년 / 반 / 번호	학년	반	번호
	성 명			
	성 별	남	여	생년월일

다음 문항에서 자신이 해당하는 곳에 "V"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일주일 동안 다음 음식을 대체로 몇 번이나 먹습니까?				
라면	① 먹지 않음	② 1~2번	③ 3~5번	④ 매일 먹음
음료수	① 먹지 않음	② 1~2번	③ 3~5번	④ 매일 먹음
패스트푸드(햄버거, 피자, 튀김 등)	① 먹지 않음	② 1~2번	③ 3~5번	④ 매일 먹음
육류(소, 돼지, 닭고기 등)	① 먹지 않음	② 1~2번	③ 3~5번	④ 매일 먹음
우유, 유제품	① 먹지 않음	② 1~2번	③ 3~5번	④ 매일 먹음
과일	① 먹지 않음	② 1~2번	③ 3~5번	④ 매일 먹음
채소(김치 제외)	① 먹지 않음	② 1~2번	③ 3~5번	④ 매일 먹음

아침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① 거의 꼭 먹음 ② 대체로 먹음 ③ 대체로 안 먹음 ④ 거의 안 먹음
살을 빼기 위해 아래와 같이 경험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있는 대로 고르시오)	① 아무 것도 안 함 ② 식단을 조절한다. ③ 약을 먹는다. ④ 운동으로 감량한다.

수면 및 신체활동	일주일에 세 번 이상 숨이 차거나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합니까?	예	아니오
	평소에 하루 몇 시간 정도 잡니까?	① 6시간 이내 ② 6-7시간 ③ 7-8시간 ④ 8시간 이상	
	친구들과 비교해서 자신의 체형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마른 편이다 ② 약간 마른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살이 찐 편이다 ⑤ 매우 살이 찐 편이다	
개인위생	식사하기 전이나 외출 후 돌아와서 비누로 손을 씻는다.	예	아니오
	하루에 두 번 이상 이를 닦는다.	예	아니오
안전	자동차를 탈 때 안전벨트를 맨다.	예	아니오
	인라인스케이트, 롤러블레이드, 스케이트보드 또는 자전거 등을 탈 때 헬멧을 쓰고 보호대를 착용한다.	예	아니오
인터넷	지난 1년 동안 사고나 외상 때문에 병원, 보건실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1번 ③ 2번 ④ 3번 이상	
	인터넷이나 게임을 하루에 2시간 이상 한다.	예	아니오
가정 및 학교생활	음란물을 보거나 성인사이트에서 채팅을 자주 한다.	예	아니오
	지난 1년 동안 친구들에게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예	아니오
	고민이 있거나 괴로울 때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예	아니오
	가정(가족)내의 문제에 대해 걱정이 된다.	예	아니오
	지난 1년 동안 가출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예	아니오
	가정이나 학교에서 폭력으로 인해 자신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	예	아니오
약물	학교 생활 문제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싶다.	예	아니오
	술이나 담배 문제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다.	예	아니오
정서	성 문제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싶다.	예	아니오
진로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스트레스가 많다.	예	아니오
	고민이나 괴로운 일로 상담을 받고 싶다.	예	아니오